

김치제품 대일 수출 통관 절차 및 검사 항목

조사회신일 : 2016.3.17

품목 : 김치

I. 상품개요

- 상품명
 - 김치
- 상품 형태
 - 배추김치

II. 자문결과

1. 김치제품의 일본 수입 통관 절차

- 가공식품을 일본에 수입시에는 첫회 수입시, 이후에는 매년 1회씩 반드시 수입 식품 검사를 실시토록 되어있으며, 동식품검사에 적합결과가 나와야만 통관이 가능하며, 사전 검사 실적이 있을경우 동제품의 추가 수출시에는 기존 검사실적을 인정받아 별도의 검사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 이에따라 컨테이너 물량의 본격적인 수출전에 소량의 샘플통관을 실시하여 일본 통관 가능 여부를 판정한 후, 본선 수출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잔류 농약 검사 및 사전 검사 제도 이용 등

- 잔류 농약 검사
 - 농약 기준치가 한일간에 상이함으로 일본내 잔류농약 기준치에 위반되지 않는지 사전에 한국내 전문 검사 기관에서 일본 수출용 기준에 맞추어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으나 수출자 자주 관리 차원)
- 한국내 사전 검사 제도 이용
 - 일본 후생노동성이 인증하는 한국내 검사기관에서 사전 성분검사를 실시하여 동시험검사증을 일본 도착시 검역소에 제출함으로써 일본내 별도 검사없이 신속히 통관이 가능한 제도가 있음으로 이용을 추천합니다.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제도)
 - 일본 검역소에서는 제품 성분 및 공정표를 보고 검사항목 및 검사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수출이 정해진 시점에서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검사 증명서는 일본정부가 규정하는 양식에 의거하여 영문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내 지정검사 기관(예) : 한국식품연구소
- 김치 검사 항목
 - 솔빈산, 총아플라톡신, 아플라톡신B1, 아플라톡신B2, 아플라톡신G1, 아플라톡신G2
 - 김치에 대해서는 상기 검사항목에 대해 통상적으로 실시하나 최종상품의 성분 및 가공 상태에 따라 검역관이 별도 추가 항목을 지시할 수도 있습니다.

3. 김치공장 등록 관련

- 김치의 일본수출시 반드시 공장등록을 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공장 및 품목을 사전에 일본정부에 등록함으로써 별도의 검사 없이 통관편리를 도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동 제도는 [사전확인제도] 로 불리워지는 제도로 매년 1회 aT에서 수출업체 대상으로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나 금년도 사업추진 일정은 현재 미정입니다.
- 담당부서 : aT 식품수출부

4. 수입자 표기 관련(라벨링)

- 수입자 표기사항 자문은 기 유선상으로 통화한 바와 같이 바이어와의 제품 협의 후 성분표가 결정 되는대로 추가 요청 할 예정입니다.